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92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임이자·김소희·우재준

이종배 · 김위상 · 김용태

유용원 • 김종양 • 조승환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 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 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마련을 위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적응역량과 기후회 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

- 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 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환경 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마. 기후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수집·관리 및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기후위기 적응진척도에 관하여 규

정함(안 제13조).

-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4조).
- 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법률 제 호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

- 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한다.
- 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 · 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 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 9.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야 한다.

- 1. 기후영향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취약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진척경과를 점검·평가하여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한다.
- 3.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 4.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 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장기 전망을 예측하여 야 한다.
 -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 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 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

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1. 부문별 · 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 2. 취약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후위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한다) 및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같은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 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 5. 그 밖에 기후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 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 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 · 분석 및 생산 · 관리를 위한 교육
 -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 론 개발

- 4.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 5.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 운영
- 6.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 라 한다)을 둔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 및 기후 회복력 증진 시책

-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 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 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및 기

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후보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기후공시 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7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 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조 사·분석
 -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 구 개발
 - 3. 적응정보의 수집 · 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 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